

고, 또 구역 내에는 78동의 주거용 건물이 있으나 평수가 적은 소厲지가 대부분이고 지상건물도 10년 내지 20년 이상된 노후 불량건물의 밀집지역으로, 지역 내에는 226세대가 거주하고 있음.

- 이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지역 내 차량통행이 어렵고, 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여 개별건축이 어려운 실정으로 주민들이 토지는 77%, 건물은 82.4%의 동의를 받아 재개발을 추진하고자 한 것으로,
- 이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주민들의 요구의사와 같이 재개발지구로 지정되도록 동의의견임.

5. 심사결과

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

의안 번호	59
----------	----

1. 건명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
2. 제안이유: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요지

- 위치: 노원구 월계동 794, 산 3-1
- 내용
 - 면적: 1,621,000m² → 1,623,809m²(증 2,809m²)
 - 도시계획사항: 자연녹지지역
 - 공람공고중 의견접수: 없음.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
- 본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은 노원구 월계동 794와 산 3-1에 있는 기존 월계근린공원의 불합리한 공원경계를 조정하기 위하여 당초 공원면적 1,621,000m²를 1,623,809m²(증 2,809m²)로 변경하고자 한 것이며,
- 본 공원경계 조정과 관련하여 공원과 인접된 자연녹지지역에 자동차학원을 설립하고자 학원 최소면적(6,600m²)에 미달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원에서 해제될 2,247m²를 자연녹지지역에 포함시키고,
- 대신 자연녹지 상단 계획도로 월편에 있

는 자연녹지 3,120m²를 공원에 편입코자 하는 내용으로서,

- 공원 경계조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 건은 현지확인후 처리의견임.

5. 심사결과

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

의안 번호	61
----------	----

1. 건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
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요지

- 위치: 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
- 내용
 - 일반주거지역 → 일반상업지역(51,400m²)
 - 준주거지역 → 일반상업지역(3,600m²)
 - 도시계획사항: 일반주거지역, 준주거지역
 - 주민 의견청취 결과: 없음.

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

- 본 마포구 합정동 414, 416 일대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자치구 도시계획 추진계획에 따라 현재의 일반주거지역 51,400m²와 준주거지역 3,600m²의 합정동 지구중심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

- 이 지역의 혼황과 여건으로 보아 중심 기능지역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타당하고,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기본계획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보아 변경 결정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※ 참고: 일반상업지역 결정예정지 도면을 보면, 합정동 378-13 일대가 요철현상을 이루고 있어 인접 배후 도로까지 상업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현지확인하는 것이 가할 것으로 사료됨.

5. 심사결과

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

의안 번호	62
----------	----

<p>1. 건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위치: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 ○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일반상업지역 → 유통상업지역(54,000㎡) • 도시계획사항: 일반상업지역 • 주민 의견청취 결과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마포구 성산동 590, 592 일대 현재의 자동차점사장 54,000 ㎡의 일반상업지역을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, ○자동차점사장은 특정한 설비의 설치가 요구된 시설이므로 시설의 성질에 쫓아 일반상업지역보다는 유통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이 토지의 합리적 이용에 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, ○시에서 제출한 변경결정안에 동의의견임.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안과 의견이 같음.</p>	<p>활권 중심지로 정해진 지역으로, ○이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서는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</p>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(지정)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8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에 따른 시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임</p> <p>3. 주요요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위치: 강남구 대치동 937 일대 ○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용도지역변경: 일반주거지역 → 준주거지역 (44,200㎡) • 용도지구지정: 도시설계지구(44,200㎡) • 주민 의견청취 결과: 없음. <p>4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본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안은 강남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대치동 937 일대 현재의 일반주거지역에 대하여 토지이용도가 높은 이 지역을 대치생활권 중심지로 정하고, ○이 지역을 중심기능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동시에 도시설계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(안)은 이 지역 개발을 위한 타당한 변경안으로 사료되어 시가 제출한 (안)에 각각 동의의견임. <p>5. 심사결과</p> <p>시 결정(지정)안과 의견이 같음.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px; 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 style="padding: 2px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padding: 2px; text-align: center;">69</td> </tr> </table> <p>1. 건명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 용도지구(도시설계) 지정</p> <p>2. 제안이유: 도시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 및</p>	의안 번호	68	의안 번호	69
의안 번호	68				
의안 번호	69				